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31
----------	-----------

발의연월일 2006년 7월 20 일
발 의 자 신주범 의원 외 9 인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그 위원정수를 재조정,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현 행		조 정 안	
위 원 회	정 수	위 원 회	정 수
의회운영위원회	5명	폐 지	
총무위원회	6명	총무위원회	5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함(안 제3조)
 - 의회사무과 : 의회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10개 부서)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8개부서)
-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안 제7조제5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제23조
-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총무위원회 6명”을 “총무위원회 5명 이내”로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6명”을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총무위원회 6명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p>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조례 및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 -----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위원회 5명 이내 2.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p>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 ----- . <단서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p> <p><신설></p> <p>② (생략)</p> <p>제7조(특별위원회)① ~ ④(생략)</p> <p>⑤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⑥(생략)</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7조(특별위원회)①~④(현행과 같음)</p> <p>⑤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⑥ (현행과 같음)</p>